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76
----------	------

2022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2년 1월 21일
- 다. 회부일 : 2022년 1월 25일
- 라. 상정일 :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2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병한)

가. 제안 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각각 면제함(안 제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 (2021. 11. 18.~ 12. 8.)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태한)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세 중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 적극지원 추진 협조(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2353, 2021.10.22.) 외

- 한편, 지방세의 감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를 적용하여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는 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문별로 3년의 일몰기한(현행 2021.1.1.부터 2024.12. 31. 까지)을 규정하여 3년 주기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도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본 조례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2의 신설은 감염병 진료를 위해 임시건축물을 설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 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9⑤ :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설치시 취득세 2%

「지방세법」 §109③ :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 1년 이상 가설건축물 재산세 0.25%

(예시) 5천만원 가설건축물 설치시, 지방세 약 120만원 부담(취득세 100, 재산세 등 20)

※ “재산세의 구성(병기세목) : 자치구세 - 재산세(본세), 특별시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취득세 및 재산세액의 20%)

※ 자치구 세입인 재산세는 각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 진행 중(현황 별첨)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 신 설 ></p>	<p>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 임시건축물이란 컨테이너 등 건축법(제20조)에서 규정한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제9조제5항)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제109조제3항제3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략)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지방세법 기본통칙」 (2016.1.1. 행정안전부)

지법9-1 【임시용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

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닐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이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해당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소급 감면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에 이른 것임.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 적극지원 추진 협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3(2021.10.22.) 외)

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현황 파악 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지원(§177의2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포함) 추진
- 코로나19 관련 기타 지방세 지원 적극행정(소급감면 등) 추진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세제지원의 방안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토록 하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 예)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특별시세 감면안

- 재무국은 지방의회 의결은 당해 연도만 적용되는 한시적 감면으로 감염병 장기화 시 재의결이 필요한바, 향후 다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17개 광역자치단체 감면 추진 현황 : 조례개정 추진(서울시 1), 의회의결(6), 감면 미추진(9), 기타(1) - 세부내역 별첨

○ 다만, 2021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과세대상 임시건축물 133개소에 대한 감면대상 지방세 (자치구세 포함) 감면 규모가 2천 5백만원에 불과하여 1개소당 19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서울시 선별진료소 현황('21.10월말)]

(단위 : 건)

합계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비고
	의료기관 (이동식, 기존 건물 제외)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지자체)	국립·시립 병원	
238	133	25	56	24	

※ 2021년 ~ 2022년 감면 추계액 : 23백만원(서울특별시세 23,003천원, 자치구 재산세 2,261천원, 상세내역 별첨),

· 임시건축물 설치 후 1년 경과 시 2021년부터 과세되는바 소급(2020.1.1.부터) 후 1년이 경과된 2021년부터 세액 산출.

- 지방세 특례의 법률주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지출예산제*, 감면 일몰제 운영 등 특정 계층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고 필요시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 지방세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

- 세금의 감면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세수 감소를 수반하여 간접 지원하는 지방세지출(감면) 방식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보다 부합하는 재정운용 방식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부칙 제2조는 해당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기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적인 소급입법과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바(2021 법령입안심사 기준 37쪽),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적용례 규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발생 초기로 소급하여 의료기관에 세제지원 하려는 공익적 측면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각각 면제함(안 제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11. 18.~12. 8.)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p><u>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감면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재무국 세제과 나은산(02-2133-3357)